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 청원번호 : 제15호
- 청 원 자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유정기 외 7,135명
- 소개의원 :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접수일자 : 2020년 2월 4일
- 회부일자 : 2020년 2월 12일

II . 청원요지

- 송파구 잠실4동에 위치한 파크리오아파트 단지에는 초등학교 2개교와 잠실고등학교가 있으나, 중학교가 없어 2개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인근 잠실 6동의 잠실중학교로 배정되어 진학함으로써 학생들의 주거안전과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음. 따라서 잠실4동의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잠실고등학교를 중고 이음(통합)학교로 설립하여 줄 것을 청원함.

III .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 잠실4동은 진주·미성 아파트의 재건축이 완공되는 2023년에는 취학 학생 수도 증가할 것이나 이미 과밀인 잠실중학교만으로는 증가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더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3개의 중학교는 통학이 위험하고,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학습환경 또한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학습자와 학부모의 주거 안정, 안전한 통학, 학습환경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잠실고등학교 내에 중학교 설립이 필요함.

IV.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청원법」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청원은 2020년 2월 4일 노승재 의원의 소개로 유정기 외 7,135명으로부터 청원번호 제15호로 제출되어 2020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청원은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내에 중학교가 없고, 이미 학급당 정원이 과밀인 잠실중학교 만으로는 현재 개발 중인 인근 아파트의 학생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바, 잠실고등학교 내에 중학교를 이음학교 형태로 설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청원의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청원은 송파구 잠실4동에 위치하고 있는 잠실고등학교 내에 중·고 통합운영학교(이하 ‘이음학교1’)¹⁾의 설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현재 6,864세대의 입주가 완료된 파크리오아파트와 2023년 입주예정인 진주아파트,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 잠실6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미아파트 역시 정비구역 지정이 2020년 3월 2일 종료됨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²⁾.

1)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

2) ‘재건축아파트 분상제·재조환 합헌에도 갈길 간다?’...잠실장미 내년 2월 조합 총회’, 뉴데일리경제, 채진솔 기자, 2019.12.30.일 기사 참조

- 따라서 동 지역은 강동송파 3학군 내에서 재건축되는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로 인해 2023년 이후 1,982세대와 455명의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바, 향후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 확충과 통학 여건의 개선을 위해 중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표-1] 강동송파 3학군 지역 중 잠실 4·6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황

구분	입주예정	추진상황	세대수			유발 학생수
			기존	완성	증가	
진주(4동)	2023	조합설립 인가	1,507	2,848	1,341	265
미성·크로바(4동)	2023	조합설립 인가	1,350	1,991	641	190
장미(6동)	미정	정비구역 지정	3,522	5,811	2,289	342
합 계			6,379	10,650	4,271	797

나. 잠실4동 내 중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

- 동 청원은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내에 중·고 이음학교를 설립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해당지역의 잠실고등학교가 이음학교로 설립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이음학교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발생으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및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학교들간에 통합 운영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육성하고자 추진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이음학교는 1개 이상의 소규모 학교 시설을 폐쇄하여 통합 운영하는 일체형과 학교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연계형, 그리고 2개 학교급 이상의 학교를 동시에 신설 및 이전하는 복

합형형태로 설립·운영됩니다3).

- 그러나 강동송파 3학교군은 교육부 소규모학교 권고기준인 300명 이하의 학교4)가 없어 통폐합 대상학교가 없으며, 해당 학군은 2개 학교급 이상의 학교가 동시에 신설되거나 이전될 계획이 없는바, 동청원이 요청하는 잠실4동의 잠실고등학교가 중·고 이음학교로 지정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학교 신설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현재 잠실4동이 위치하고 있는 강동송파 3학군은 잠실중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중학교가 있으며, 잠실 4·6동의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증가하는 세대수는 4,271세대로서 학교신설 기준5)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잠실4동이 포함된 강동송파 3학군의 학생수는 2022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표-2] 강동송파3학교군 학생배치계획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학생수	7,771	7,892	7,948	7,690	7,433	7,399
학급수	304	298	299	294	289	289
급당인원	25.6	26.5	26.6	26.2	25.7	25.6

※ 장미아파트 재건축계획 미 수립으로 학생배치계획 미반영

3) '서울형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제정', 2018.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간기획추진단.

4)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교육부 권고기준(통합운영 관리대상 학교 규모)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학생수 (또는 학급수)	240명 이하 (또는 12학급 이하)	300명 이하(또는 15학급 이하)	

5)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구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비고
설치비율	2개 근린주거구역에 1개 설치	3개 근린주거구역에 1개 설치	1개 근린주거구역단위 세대수 : 2천~3천세대
세대수	4천~6천 세대	6천~9천세대	

[표-3] 강동송파3학교군 학교별 학생배치계획

학교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학급 수	학생 수	급당 인원	학급 수	학생 수	급당 인원	학급 수	학생 수	급당 인원	학급 수	학생 수	급당 인원	학급 수	학생 수	급당 인원	학급 수	학생 수	급당 인원
가락중	24	534	22.3	22	517	23.5	22	511	23.2	21	495	23.6	19	452	23.8	19	440	23.2
해누리중	23	325	14.1	22	462	21.0	23	495	21.5	20	408	20.4	17	321	18.9	17	298	17.5
방산중	19	465	24.5	19	463	24.4	19	461	24.3	18	424	23.6	18	384	21.3	18	380	21.1
방이중	19	409	21.5	18	402	22.3	18	366	20.3	18	346	19.2	18	336	18.7	18	344	19.1
신천중	37	1,254	33.9	37	1,241	33.5	37	1,213	32.8	37	1,201	32.5	37	1,171	31.6	37	1,185	32.0
아주중	23	533	23.2	22	504	22.9	23	514	22.3	23	518	22.5	23	521	22.7	23	512	22.3
잠신중	36	1,183	32.9	36	1,183	32.9	36	1,208	33.6	36	1,189	33.0	36	1,181	32.8	36	1,167	32.4
잠실중	37	1,136	30.7	37	1,165	31.5	37	1,214	32.8	37	1,220	33.0	37	1,255	33.9	37	1,302	35.2
배명중	24	563	23.5	24	564	23.5	24	523	21.8	24	476	19.8	24	423	17.6	24	414	17.3
일신여중	24	421	17.5	24	419	17.5	24	428	17.8	24	428	17.8	24	414	17.3	24	436	18.2
정신여중	38	948	24.9	37	972	26.3	36	1,015	28.2	36	985	27.4	36	975	27.1	36	921	25.6
11개교	304	7,771	25.6	298	7,892	26.5	299	7,948	26.6	294	7,690	26.2	289	7,433	25.7	289	7,399	25.6

[그림-1] 강동송파3학교군 중학교 현황



○ 따라서 강동송파 3학교군은 중학교를 신설할 설립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잠실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중·고 이음학교를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강동송파 3학군 내 중학생이 감소 추세에 있어 중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중·고 이음학교 지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행정관리담당관-1817,2020.2.13.)

다. 종합의견

- 현재 동 강동송파지역은 주택재개발 등의 세대수 증가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동송파 3학군은 학교신설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학생배치계획 상 중학생의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청원의 이음학교의 전제가 되는 중학교 신설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 잠실중학교는 급당인원이 30.7명에 달해 서울시교육청 급당인원 기준인 26명⁶⁾과 비교했을 때 과밀학급에 해당하여 학습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더욱이 잠실중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장미아파트는 아직 재건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강동송파 3학군의 학생배치계획 수립시 해당사항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미아파트에 대한 재건축계획이 수립 및 시행될 경우 동 학군의 학생배치계획은 재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잠실중학교는 장미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인하여 학습환경이 더욱 나빠질 우려가

6)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급당인원은 26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부 학교신설 교부금 산정기준시 급당인원은 33명을 기준으로 함.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군의 증가하는 학생 수용을 위한 인근학교의 분산배치를 포함하여 교실 증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잠실4동 파크리오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청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시행 2017. 9. 21.] [서울특별시규칙 제30호, 2017. 9. 21., 일부개정]

제6조(청원의 심사·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붙여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